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32호 2014. 8. 20.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4 - 7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
- 정선군 고시 제2014 - 75호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기본계획 고시 3
- 정선군 고시 제2014 - 76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4
- 정선군 고시 제2014 - 7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 12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4 - 649호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13

#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4 - 72호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2009년 폐교된 한국폴리텍대학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용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국가암추센터 건립을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변경 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32-1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한국광물자원공사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 별첨조서 참조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정선	청소년 수련시설	북평면 북평리 332-1대 일원	55,480	감) 55,480	-	정선군고시 제96호 (2010.7.9)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정선 청소년수련시설	◦폐지 - 감) 55,480m <sup>2</sup>	◦2009년 폐교된 한국 폴리텍 대학의 건축물 및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지질자원의 통합관리와 연구개발의 중심시설인 국가암추센터건립을 위해 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폐지

2)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국가암추센터	북평면 북평리 332-1대 일원	-	증) 55,480	55,480	금 회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국가암추센터	◦신설 - 증) 55,480m <sup>2</sup>	◦2009년 폐교된 한국 폴리텍 대학의 건축물 및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지질자원의 통합관리와 연구개발의 중심시설인 국가암추센터건립을 위해 연구시설 신설

건축물의 범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비 고
①	국가암추센터 (연구시설)	20%이하	50%이하	4층이하	자연녹지지역

정선군 고시 제2014- 75호

### 정선 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기본계획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와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1조, 제71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서』에 의한 『정선 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정선 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2. 사업의 목적

- 전통농업과 산간문화를 중심으로 한 304가지 특색있는 음식의 보전체험을 통하여 1·2·3차산업을 융복합화 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방문객에게 폭 넓은 교육의 장 마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3리 외 13개리
- 사업내용 :
  - 주민소득증대 : 정선 304 맛 전수관 조성(A=3,604㎡),
    - 맛 전수관, 토속음식 가공시설, 체험공간
  - 지역경관개선 : 맛 이야기 거리 조성(L=250m),
    - 간판 정비, 테마거리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맛 장인 육성, 맛 스토리텔링 개발, 토속음식 자원화 주민교육

4. 사업비 : 2,0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14. 9. ~ 2015. 12.

6. 사업효과

- 토속음식체험관 주변 거리 전체를 토속음식거리화 유도
- 지역 농산물 소비 및 직거래 촉진으로 산골 소농가 소득증대
- 천년 넘게 이어온 우리나라 농촌 산간마을 토속음식문화 보전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8. 열람장소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33-560-2365, 2370)

정선군고시 제2014 - 76호

###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2-77(2002.4.08)호로 결정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20일

정 선 군 수

- 가. 결정취지 : 사북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로1-1호선, 소로3-29호선, 소로2-3호선에 대하여 현황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로계획 변경으로 사북읍사무소 주변 상업시설밀집지역의 교통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2번지 일원
- 다. 면 적 : 97,466㎡(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 마.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 바.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③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44-2대 일원	97,466	-	97,466	강고 제77호 (02.4.8)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7,466	-	97,466	100.0	
주거지역	소 계	29,030	-	29,030	29.8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030	-	29,030	29.8	
상업지역	소 계	65,160	-	65,160	66.9	
	일반상업지역	65,160	-	65,160	66.9	
녹지지역	소 계	3,276	-	3,276	3.3	
	자연녹지지역	3,276	-	3,276	3.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10	1,959	1	399	3	313	6	1,247
	변경	10	1,954	1	252	2	232	7	1,470
대로	기정	1	106	-	-	-	-	1	106
	변경	1	106	-	-	-	-	1	106
중로	기정	3	985	-	-	1	165	2	820
	변경	3	985	-	-	1	165	2	820
소로	기정	6	868	1	399	2	148	3	321
	변경	6	863	1	252	1	67	4	544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106	중로 2-2 사북리 305-8대	중로 3-1 사북리 산77-3도	일반도로	범바위골 진입부	강고 294호 (73.7.12)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선도로	903 (484)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도로	사북교	강고 194호 (76.12.7)	
기정	중로	3	11	14	국지도로	336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11도	일반도로	지장천	강고 26호 (79.2.8)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도로	1,720 (165)	대로 3-1 사북리 305-4도	사북구역계 사북리 452-36도	일반도로	사북여중	강고 26호 (79.2.8)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99	대로 3-1 사북리 308대	소로 3-29 사북리 344-154대	일반도로	사북 감리교회	강고 83호 (02.4.15)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252	대로 3-1 사북리 308대	소로 3-32 사북리 317-166대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7	중로 3-2 사북리 317-181대	소로 1-1 사북리 317-164대	일반도로	사북 전화국	강고 26호 (79.2.8)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89 (157)	중로 3-2 사북리 307-28대	소로 1-3 사북리 452천	일반도로	사북초교	강고 26호 (79.2.8)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454 (64)	소로 3-3 사북리 307-1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북리 산143-11입	일반도로	사북초교	강고 26호 (79.2.8)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100	소로 1-1 사북리 344-133대	중로 3-2 사북리 344-67대	일반도로	-	강고 300호 (03.12.13)	
변경	소로	3	29	6~7	국지도로	227	소로 3-32 사북리 317-200도	중로 3-2 사북리 344-6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소로 1-1 사북리 317-182도	일반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 26호 (79.2.8)	
변경	소로	3	32	6~7	국지도로	96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중로 2-1 사북리 317-167도	일반도로	사북읍 사무소	-	

※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	소로 1-1	◦ 노선축소 L = 399m → 252m (감 147m)	◦ 도로개설이 어려운 국도38호선(중로2-1호선) 법면구간의 현황여건 반영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 3-29	소로 3-29	◦ 노선변경 - L = 100m → 227m (증 127m) - B = 6m → 6~7m	◦ 지역주민 협의결과를 반영한 도로계획 변경으로 사북읍사무소 주변 상업시설밀집지역의 교통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소로 2-3	소로 3-32	◦ 노선연장, 폭원축소 - L = 81m → 96m (증 15m) - B = 8m → 6~7m	◦ 현황 도로여건을 반영하여 노선연장 및 폭원축소

나) 녹 지 : 변경없음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로2-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사북읍 사북리 344-153중 일원	27,753 (2,739)	-	27,753 (2,739)	강고 제83호 (02.4.15)	

※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면적임

다) 공 원 : 변경없음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읍공원	근린공원	사북읍 사북리 산77입 일원	169,309	-	169,309	건고 제194호 (76.12.7)	

라) 학 교 : 변경없음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북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북읍 사북리 344-4학 일원	12,350	-	12,350	강고 제109호 (82.8.14)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증·감 (㎡)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C1	2,700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2,700	-	
기정	C2	3,170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3,170	-	
기정	C3	12,520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12,520	-	
<b>변경</b>	<b>C4</b>	<b>4,190</b>	<b>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b>	<b>4,361</b>	<b>증)171</b>	
기정	C5	1,620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1,620	-	
<b>변경</b>	<b>C6</b>	<b>13,028</b>	<b>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b>	<b>12,218</b>	<b>감)810</b>	
<b>변경</b>	<b>C7</b>	<b>7,000</b>	<b>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b>	<b>7,027</b>	<b>증)27</b>	
기정	C8	16,560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16,560	-	
기정	C9	3,570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3,570	-	
기정	C10	160	사북읍 사북리 산77-6번지 일원	160	-	
기정	C11	120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120	-	
기정	C12	4,470	사북읍 사북리 산72-12번지 일원	4,470	-	
기정	C13	750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750	-	
신설	C14	-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486	증)486	
신설	C15	-	사북읍 사북리 344-111번지 일원	806	증)806	• 공공공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4층(1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4층(1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용 도	◦ 학교(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150% 허용 : 200%	
			높 이	◦ 4층(20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변경	C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지구 단위 계획 지침도 참고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4층(1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4층(1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변경	C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지구 단위 계획 지침도 참고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변경	C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지구 단위 계획 지침도 참고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8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9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기정	C10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7-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1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2-1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하천경계부터 4m	
기정	C1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신설	C1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C6에서 분리  지구 단위 계획 지침도 참고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신설	C1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111번지 일원	용 도	◦ 공공공지	지구 단위 계획 지침도 참고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C1	사북리 346-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2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공개공지	
기정	C3	사북리 344-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변경	C4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 공개공지 ※ 변경없음	도면 참조
기정	C5	사북리 345-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변경	C6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 소로1-1호선 노선축소 및 소로3-29호선 노선변경으로 인 한 일부구간 보차혼용통로 축소	도면 참조
변경	C7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2m), 공동주차출입구 ※ 소로2-3호선 폭원축소로 인한 보차혼용통로 일부구간 축소	도면 참조
기정	C8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2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9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10	사북리 산77-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1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2	사북리 산72-12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13	사북리 307번지 일원	◦ 공개공지	
신설	C14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 해당없음 ※ 블록번호 C14 신설	도면 참조
신설	C15	사북리 344-111번지 일원	◦ 공공공지 ※ 소로1-1호선 노선축소 및 소로3-29호선 노선변경으로 인 한 공공공지 신설 ※ 블록번호 C15 신설	도면 참조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 정	변 경	비고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이하 생략”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이하 생략”	변경 없음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이하 생략”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이하 생략”	변경 없음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 “이하 생략”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 “이하 생략”	변경 없음
제2절 도시안내 체계 “이하 생략”	제2절 도시안내 체계 “이하 생략”	변경 없음
제3절 옥외가로시설물 “이하 생략”	제3절 옥외가로시설물 “이하 생략”	변경 없음
	제4절 공공공지 제23조 (공공공지 일반사항) ① 공공공지의 설치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한다	신설

정선군 고시 제2014 - 78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고한9지구	정선군 고한읍 고한9길 92-11 일원	붕괴 위험	가	2,50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 해소	2010.05.12.
낙동리지구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33-1 번지 일원	붕괴 위험	다	7,00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 해소	2010.05.12.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도면 : 1부(따로붙임)

2014년 8월 20일

정 선 군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4-649호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1994-107(1994.6.17)호로 결정된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8월 19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3-1번지 일원
- 면 적 : 222,468㎡(변경없음)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화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화암면사무소
-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이상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실음 생략**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실음 생략**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화암면사무소로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와 화암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